

<2020.3.1.자 교장공모제 안내>

본교는 2020.3.1.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.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·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교장공모제** : 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,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
- **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**

유 형	추진근거	자 격 기 준	대 상 학 교
초빙형	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	·교장자격증 소지자(교육공무원)	일반학교 (우리 학교)
내부형	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	·교장자격증 소지자(교육공무원) ·초·중·등·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교원(자격증 미소지자) :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(내부형의 50% 범위)	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
개방형	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	·교장자격증 소지자(교육공무원) ·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자격증 미소지자) *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	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·고 특목고 예체능계고

•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

- 2020.3.1.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가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
-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여부 결정
-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(도서·벽지·농산어촌·소외지역·낙후 지역 및 희망·선호정도,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)
- 대상학교에서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**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실시**하여 심사하며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추천
-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도교육청에 신청(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)
- 도교육청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제청(추천)

• 기타사항

-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(2020.3.1. ~ 2024.2.29.)
- 공모가 만료되면 공모 이전의 직위로 복귀함
-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,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**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'2020.3.1.임용 교장공모제 시행계획' 참고**
-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연수에 참여해 주세요.

(교장공모제 안내 학부모 연수)

1. 일시 : 2019년 11월 7일(목) 15:00~
2. 장소 : 도서실
3. 연수내용 : 교장공모제의 이해